

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578호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: 2025. 1. 15.

제안자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부천시의 조례이기 때문에 시·도경찰청장, 도지사 등이 조례에 들어갈 필요성이 없어 조례의 형식에 맞게 수정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“시·도경찰청장·경찰서장·지구대장·파출소장”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“경찰서장·지구대장·파출소장”으로 하고, “시·도지사, 시장·구청장 또는 동장”을 “시장·구청장 또는 동장”으로 수정함.
- “시·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”으로 된 부분을 “경찰서장”으로 수정함.

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수정안

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시장”을 “부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5호 중 “시·도경찰청장·경찰서장·지구대장·파출소장(이하 “시·도경찰청장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경찰서장·지구대장·파출소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시·도지사, 시장·구청장 또는 동장이”을 “시장·구청장 또는 동장이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시·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”을 “경찰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”을 “경찰서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시·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”을 “경찰서장”으로 한다.

『위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<u>시장</u>은 지역사회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 법대와 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<u>부천시장은</u> (이하 “<u>시장</u>”이라 한다)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<u>부천시장은</u> (이하 “<u>시장</u>”이라 한다)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임무) 방법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시·도경찰청장</u> · <u>경찰서장</u> · <u>지 구대장</u> · <u>파출소 장(이하 “시·도 경찰청장등”이라 한다)</u>이 지역사회 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</p> <p>6. <u>시·도지사</u>, <u>시장</u> · <u>구청장</u> 또는 <u>동장</u></p>	<p>제4조(임무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 음)</p> <p>5. <u>시·도경찰청장</u> · <u>경찰서장</u> · <u>지구 대장</u> · <u>파출소장</u>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4조(임무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 음)</p> <p>5. <u>경찰서장</u> · <u>지구 대장</u> · <u>파출소장</u>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6. <u>시장</u> · <u>구청장</u> 또 는 <u>동장이</u>-----</p>

④ (생략)

⑤ 기타 시장은 방법
대와 연합대의 원
활한 운영 및 지도
· 감독을 위하여
시·도경찰청장 또는
경찰서장과 상호
협력체계를 구
축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원 등) ①·

② (생략)

<신설>

제8조(지원신청) ①

(생략)

② 시장은 예산지
원 여부와 규모를
결정하기 위해 시
·도경찰청장이나
경찰서장에게 방법
대와 연합대의 활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 경찰서
장-----
-----.

제7조(개정안과 같음)

제7조(지원 등) ①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방법활
동을 수행하는 차
량에 대하여 「부
천시 주차장 설치
및 관리 조례」 등
관련 조례에 따라
주차요금을 감면할
수 있다.

제8조(지원신청) ①
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경찰서장 -----

동실적 등에 관한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		----- ----- ----- --.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시장”을 “부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5호 중 “시·도경찰청장·경찰서장·지구대장·파출소장(이하 “시·도경찰청장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경찰서장·지구대장·파출소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시·도지사, 시장·구청장 또는 동장이”을 “시장·구청장 또는 동장이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신고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”을 “경찰서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시·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”을 “경찰서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”을 “경찰서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「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등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제8조제2항 중 “시·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”을 “경찰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<u>시장</u>은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법대와 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임무) 방법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시·도경찰청장·경찰서장·지구대장·파출소장(이하 “시·도경찰청장등”이라 한다)</u>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</p> <p>6. <u>시·도지사, 시장·구청장 또는 동장이</u>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</p> <p>제5조(지원대상) 법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<u>신고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</u>에게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방법활동을 실시하는 방법대와 연합대로 한다.</p> <p>제6조(지도·감독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방법대와 연합대의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<u>부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4조(임무)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경찰서장·지구대장·파출소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6. <u>시장·구청장 또는 동장이</u> 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5조(지원대상) -----</p> <p>----- <u>경찰서장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6조(지도·감독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

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·감독하기 위해 시·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정기·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⑤ 기타 시장은 방법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·감독을 위하여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원 등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제8조(지원신청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예산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시·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방법대와 연합대의 활동실적 등에 관한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----- 경찰서장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 경찰서장-----
-----.

제7조(지원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방법활동을 수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「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등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경찰서장-----

-----.